

대구지방법원 2022. 11. 16 선고 2022나310649 판결 [공사대금반환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A

피고, 항소인 B

변 론 종 결 2022. 10. 19.

판 결 선 고 2022. 11. 16.

제1 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 2022. 4. 13. 선고 2021가소36930 판결

주 문

1.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.
2.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당사자의 주장

가. 원고

원고는 2021. 6. 13. 주식회사 C의 총괄이사인 D와 대금 1,800만 원에 'E' 공사계약을 체결하고, 계약서에 기재된 경리이사 피고의 계좌로 공사대금 1,300만 원을 송금하였다. 그러나 위 회사, D 및 피고는 탄성작업(뚫는 작업)만 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전혀 진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, 피고는 위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,3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

피고는 위 회사의 경리이사도 아니고 직원도 아니다. 매제인 D이 신용이 좋지 않아 본인의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여 D에게 통장을 빌려주었고 D이 피고의 통장을 관리하며 사용하였다. 피고는 위 공사계약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며 위 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.

2. 판단

갑 제4 내지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공사계약서에 '경리이사 우체국 (계좌번호 1 생략) B(피고)'이라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위 계좌로 1,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, 위 회사와 D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,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1,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, 달리 피고에게 그와 같은 의무를 지울 근거를 찾을 수 없다. 원고도 위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와 만나거나 연락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.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.

3. 결론

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김지영, 판사 윤남현, 판사 장래아